

5

주요예산 집행결과

5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■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충청북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기본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3,861,971	6,101	0.16	
일반운영비		1,763	0.04	
여 비		2,601	0.07	
업무추진비		1,011	0.03	
직무수행경비		536	0.01	
자산취득비		190	0.0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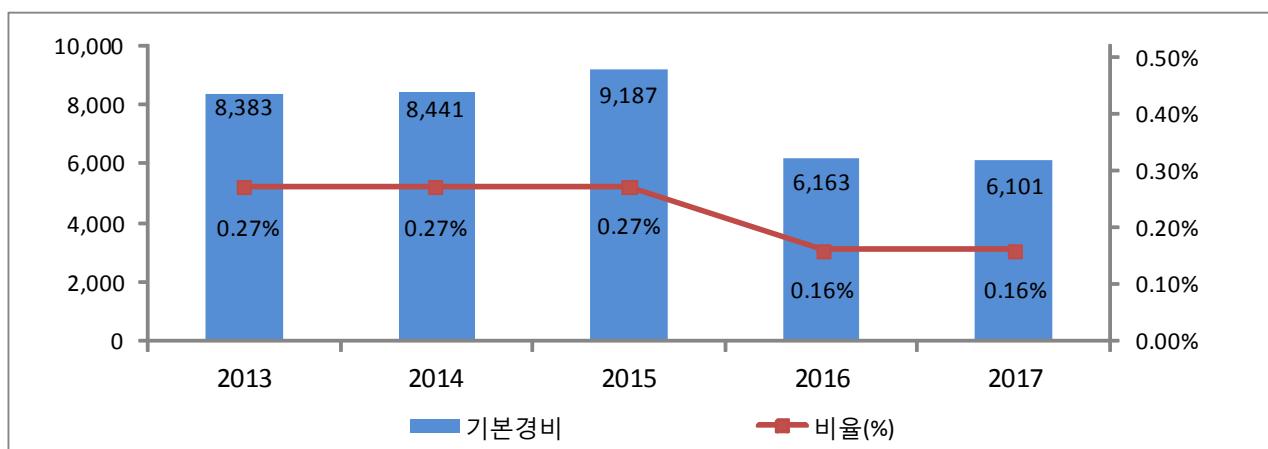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행정운영경비의 설정' 중 기본경비 항목
-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(201-01)+공공운영비 (201-02), 여비는 국내여비 (202-01)+월액여비 (202-02),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 (203-02)+부서운영업무추진비 (203-04),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(204-01),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(405-01)

❖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分	연 도 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세출결산액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	3,750,312	3,861,971
기본경비	8,383	8,441	9,187	6,163	6,101
비율	0.27	0.27	0.27	0.16	0.16

기본경비 연도별 변화



- ☞ 2017년도 기본경비 집행액은 6,101백만원으로 2016년도에 비하여 62백만원, 1%가 감소하였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전체 결산액의 0.16%를 유지하였습니다.
- ☞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, 일반운영비 115백만원(7%) 증가, 업무추진비 105백만원(9.4%) 감소, 직무수행경비는 14백만원(2.5%) 감소, 자산취득비는 59백만원(23.7%) 감소하는 등 2016년에 이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.

5-2.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

-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,870m²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은 없습니다.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충청북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	충청북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	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	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
16,825	24,695	△7,870	-

- ▶ 「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」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

5-3.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

■ 우리 충청북도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인건비 (B)	비율 (B/A)	비고
합 계	3,861,971	171,940	4.45	
인건비(101)		119,176	3.09	
직무수행경비(204)		3,857	0.1	
포상금(303)		5,529	0.14	
연금부담금 등 (304)		43,378	1.12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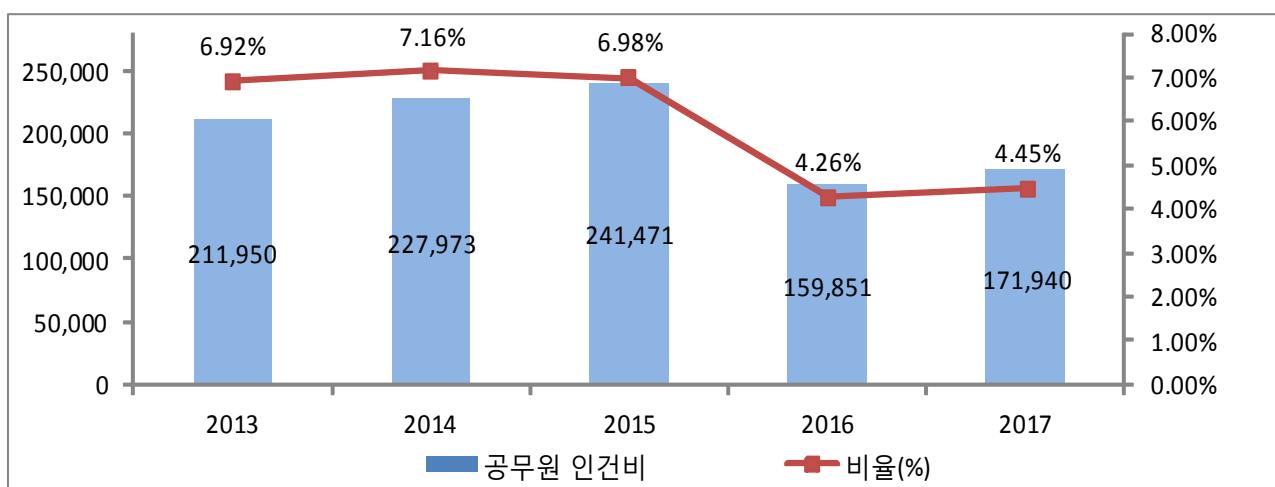
- 인건비는 보수(101-01), 기타직보수(101-02), 무기계약근로자보수(101-03),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(204-02), 포상금은 성과상여금(303-02),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(304-01), 국민건강보험금(304-02)이 해당함
- 보수(101-01)는 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(7개 통계목)

❖ 인건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세출결산액(A)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	3,750,312	3,861,971
인건비(B)	211,950	227,973	241,471	159,851	171,940
인건비비율(B/A)	6.92	7.16	6.98	4.26	4.45

인건비 연도별 변화



5-4.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
■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업무추진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	1,869	0.05	
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3-01)	3,861,971	595	0.02	
시책추진업무추진비 (203-03)		1,273	0.03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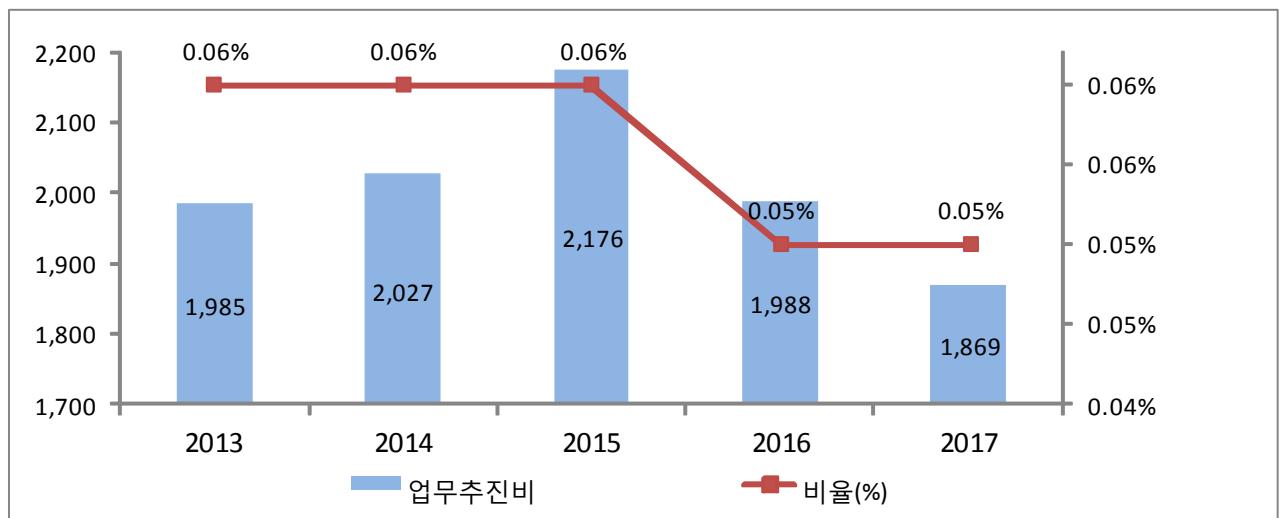
‣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7년 결산결과 203-01, 203-03 집행총액

❖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分	연도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세출결산액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	3,750,312	3,861,971
업무추진비	1,985	2,027	2,176	1,988	1,869
비율	0.06%	0.06%	0.06%	0.05%	0.05%

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



☞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 11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.

‣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첨 5-4]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참조하세요.

5-5. 국외여비 집행현황

■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	비고
(별첨 5-5 국외여비 집행현황 참조)					
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[\[별첨 5-5\] 국외여비 집행현황](#)을 참조하세요.

5-6.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
■ 우리 충청북도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세출결산액 (A)	의회경비 집행액 (B)	의회경비 비율 (B/A)	지방의원 정수 (C)	1인당 의회경비 (B/C)(천원)
3,861,971	2,248	0.06	31	72,50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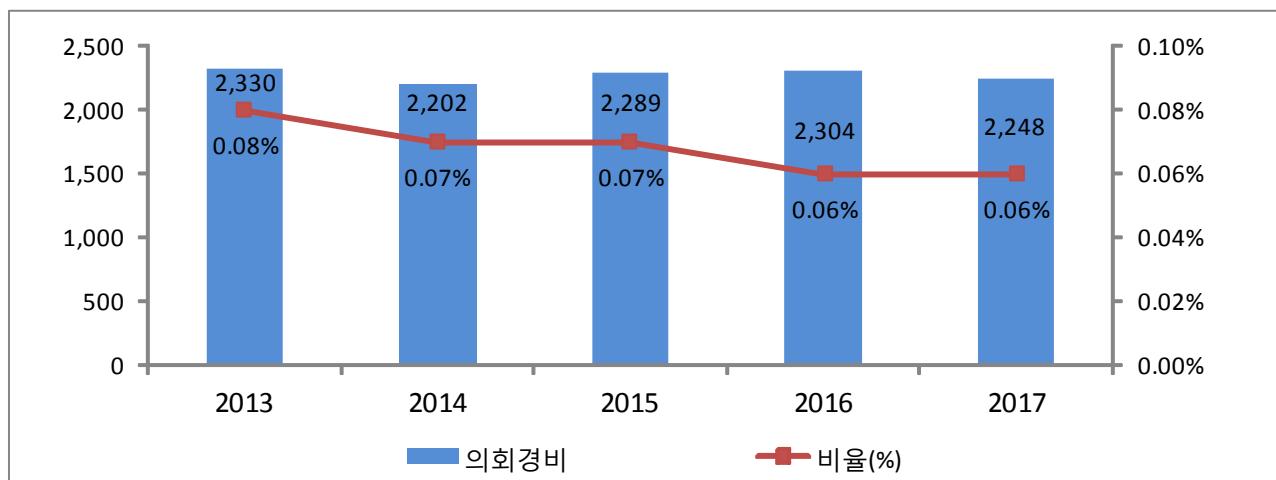
- 대상 회계 및 집행액 : 일반회계, '17년 결산결과 의회비(205-01~09) 집행액
-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(205-01), 월정수당 (205-02), 국내여비 (205-03), 의정운영공통 경비 (205-05),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5-06), 의장단협의체부담금 (205-07), 의원국민연금부담금 (205-08), 의원국민건강부담금 (205-09)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(205-04)임

❖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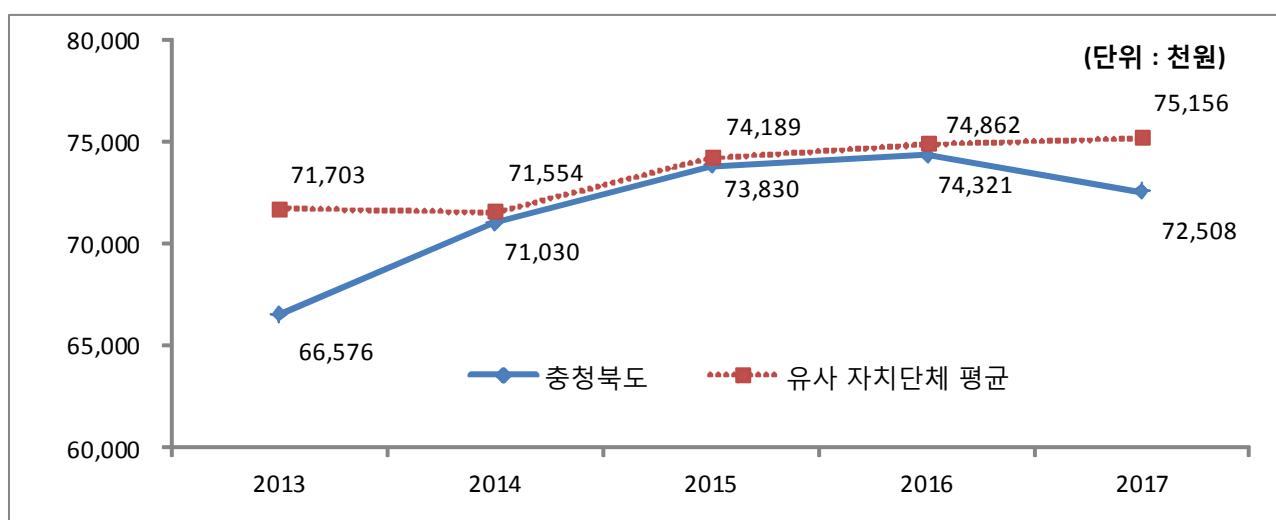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세출결산액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	3,750,312	3,861,971
의회경비	2,330	2,202	2,289	2,304	2,248
의원 정수	35	31	31	31	31
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	0.08%	0.07%	0.07%	0.06%	0.06%
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(천원)	66,576	71,030	73,830	74,321	72,508

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



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

☞ 의회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5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.

5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국외여비 집행액 (A)	지방의원 정수(명) (B)	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(A/B)(천원)
51	31	1,659

▶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, 지방의원 정수는 2017.12.31일 기준(별첨)

❖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

(단위 : 천원, 명)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출장의원수 (동행공무원)	국외여비 집행액
2017.3.13~ 2017.3.17	베트남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(외국인환자 유치 설명회 및 협의)	베트남	1	1,522
2017.5.27~ 2017.5.31	러시아 연해주 신규교류 추진 (우호협력의향서 체결 및 협력방안 논의)	러시아	6 (4)	12,903
2017.6.23~ 2017.7.3	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(태양광 및 미래먹거리산업 연수)	프랑스, 스위스, 이탈리아	4 (3)	24,000
2017.7.18~ 2017.7.22	행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(청주지역 호우피해에 따른 중도극복)	프랑스, 이탈리아	4 (3)	13,016

☞ 2017회계연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은 51백만원이며, 1인당 집행액은 1,65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백만원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.

5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■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, 2017년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대상인원 (A)	세출 결산액 (B)	맞춤형 복지비 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(천원)
4,021	3,861,971	4,683	0.12	1,16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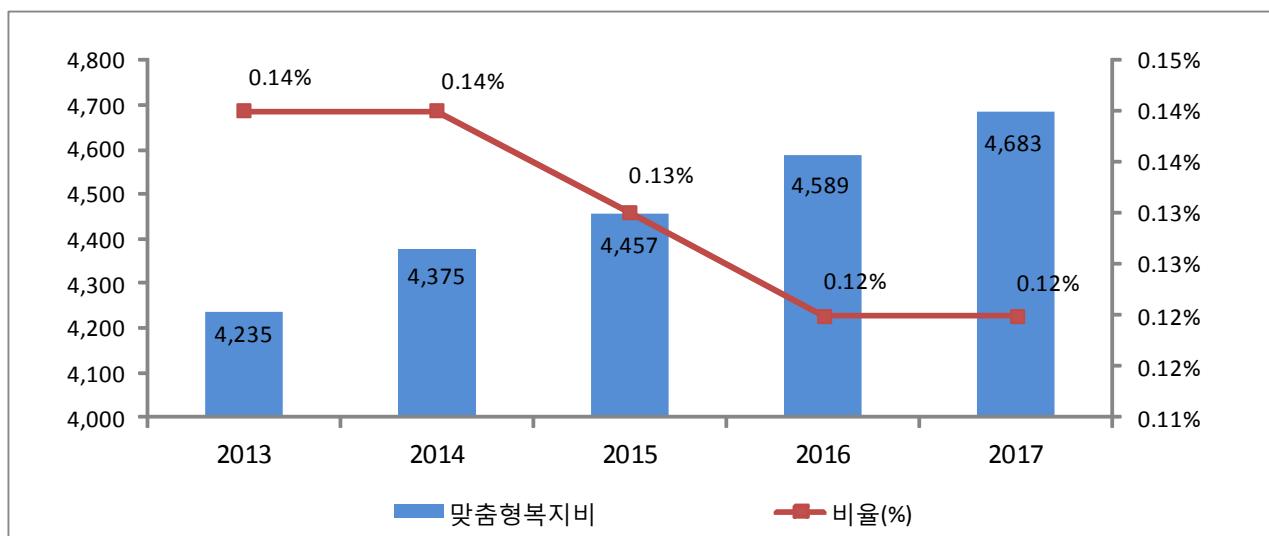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▶ 세출결산액 : '17년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
- ▶ 맞춤형복지비 : '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-사무관리비(201-01) 중 7.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

❖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대상인원 (A)	3,430	3,735	3,826	3,941	4,021
세출결산액 (B)	3,064,855	3,182,188	3,458,003	3,750,312	3,861,971
맞춤형 복지비 (C)	4,235	4,375	4,457	4,589	4,683
비율(C/B)	0.14	0.14	0.13	0.12	0.12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(천원)	1,235	1,171	1,165	1,165	1,165
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



☞ 맞춤형복지비는 지난해에 비해 94백만원 증가하였으며, 이는 대상인원 80명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.

5-9. 연말지출 비율

- 우리 충청북도에서 2017년 11월~12월 중에 지출(원인행위)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비율 (B/A)
계	125,838	13,928	11.07
시설비 (401-01)	123,845	13,868	11.2
감리비 (401-02)	1,540	5	0.3
시설부대비 (401-03)	235	43	18.33
행사관련시설비 (401-04)	219	12	5.4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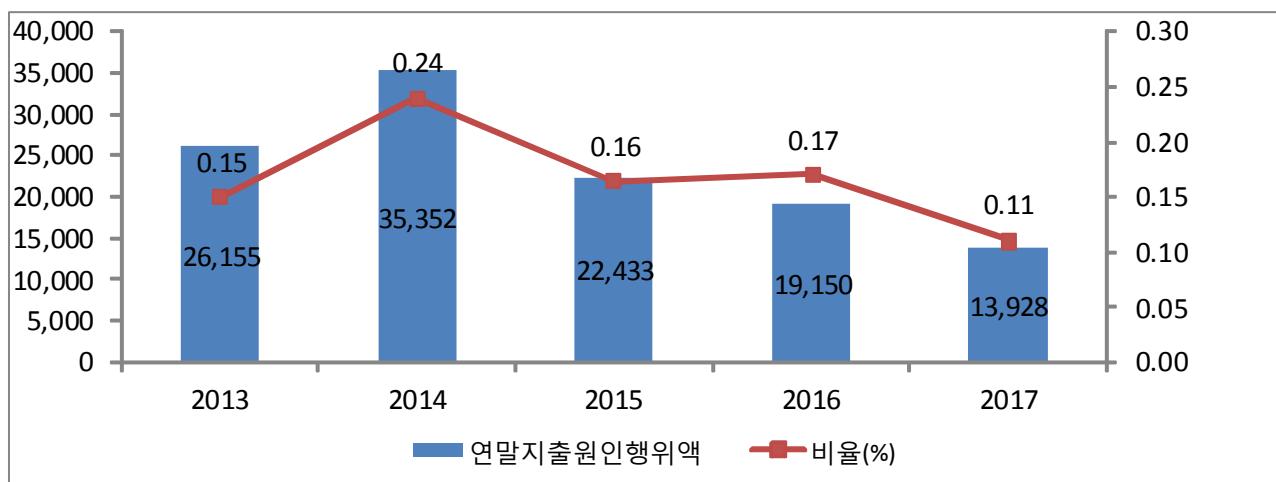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본청분만 해당(직속기관, 사업소 등은 제외)
- 세출결산액은 목적(시설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, 행사관련시설비) 지출액

❖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3	2014	2015	2016	2017
세출결산액 (A)	174,723	147,469	136,924	112,572	125,838
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26,155	35,352	22,433	19,150	13,928
비율(B/A)	14.97	23.97	16.38	17.01	11.07

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



- 2017년도 균형집행 실시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연말 지출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5,222백만원, 약 0.06% 감소하였습니다.

5-10.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

-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, 그 성격은 일반재원(기타수입, 223-09)에 해당합니다.

우리 충청북도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❖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고은행	약정기간	약정기간 총액	예산 편성액	실제 출연액	세입 처리액
합 계			6,500	2,300	2,300	2,300
제1금고	농협은행	'15.01.01~ '17.12.31.	5,500	1,900	1,900	1,900
제2금고	신한은행	'15.01.01~ '17.12.31.	1,000	400	400	400

- ▶ 제1금고 :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제2금고 등 :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'15.1.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('14.5.28)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

❖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.집행내역

- ▶ 용도지정 없이 일반예산으로 편성 집행